

칠서산단 남 제련업체 규탄 및 남지읍 주민 건강영향조사 포함 촉구 결의문



창녕군의회

칠서산단 납 제련업체 규탄 및 남지읍 주민 건강영향조사 포함 촉구 결의문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함안군 칠서산업단지와 마주하고 있어, 기상 여건에 따라 악취와 환경오염물질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지난 2023년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당시에도 주민 생존권 위협을 우려해 강력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남지읍 주민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이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철저히 훼손당하고 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칠서산단 내 악취 유발 기업인 납 제련업체 (주)코바가 2001년 인허가 당시 연간 3.9톤을 배출한다고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93배를 초과한 연간 364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온 참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고장 나고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납 제련 생산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저농도 노출만으로도 아동 발달장애와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 유해 물질인 납을 이토록 무단 배출한 것은 주변 주민들의 생명을 짓밟은 반인륜적 행태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칠서산단 주변 건강영향조사에 나섰으나, 정작 낙동강을 끼고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납지읍 주민들은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은 현행 행정법 체계의 심각한 구조적 맹점에서 비롯되며, 환경오염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확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확정된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칠서산단의 각종 불법적 행정행위와 공장 가동이 연접한 창녕군 납지읍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힘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군민들이 건강 영향조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건강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창녕군의회는 군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칠서산단의 추가적인 악취 및 환경오염 유발 사업 확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아가 이 같은 억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에 더욱 엄격한 관리와 정당한 조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93배 축소 신고하고 방지시설
마저 끄고 가동해 주민 생명을 위협한 (주)코바에 대하여 즉시 조업
정지를 명하라.

하나. 정부는 남 제련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창녕군 남
지읍 주민을 즉각 포함하고, 배출 오염물질 전체로 조사 항목을 확
대함과 동시에 건강검진과 생체모니터링 병행 및 대기, 의료, 환경
단체 등 주민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조사단을 즉시 구성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2021년 칠서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도
문제를 방치한 책임을 지고, 1만 남지읍민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협의회를 즉각 구성하라.

2026. 7. 31.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